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50433	www.libroarts.co.kr (people1@i-screamarts.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5. 05. 2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 05. 08.	

LIBROARTS

리 브 로 아 르 츠

정 보 공 개 서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가맹본부 주식회사 아이스크림아트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8층(대치동, 신안빌딩)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3452-7478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3452-7478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아이스크림아트	리브로아르츠(LIBROARTS)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8층(대치동, 신안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9.03.19.	2019.03.25..	이석호	02-3452-7478	02-3440-7662
	법인등록번호	160111-0510605	사업자등록번호	337-88-01568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이석호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8층(대치동, 신안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석호	02-3452-7478	02-3440-766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서동수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8층(대치동, 신안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석호	02-3452-7478	02-3440-766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남기복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8층(대치동, 신안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석호	02-3452-7478	02-3440-766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박기석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8층(대치동, 신안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석호	02-3452-7478	02-3440-766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박대민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8층(대치동, 신안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석호	02-3452-7478	02-3440-766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남경우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8층(대치동, 신안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석호	02-3452-7478	02-3440-7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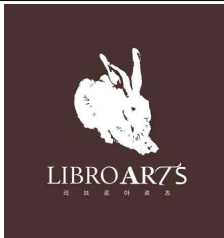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합병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다른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리브로 아르츠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2021.02.18.	대전 유성구 지족북로 33, 108동 1104호(지족동, 노은꿈에그린1단지)	김진아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리브로아르츠(LIBROARTS)]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리브로아르츠(LIBROARTS)	
상 호	리브로아르츠(LIBROARTS) OO점	
상표(서비스표)		상표 제41-0349387-0000호
광고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559,920	3,575,586	-1,015,665	158,530	-1,280,669	-1,279,065
2022년	8,677,497	10,170,834	-1,493,337	188,759	-4,011,195	-3,897,138
2023년	3,994,054	10,180,918	-6,186,863	224,289	-4,905,928	-4,691,335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가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석호	대표이사	2023.08.16.~현재	대표이사	업무총괄
	박기석	사내이사	2021.12.02.~현재	당사 사내이사	-
	박대민	비상무이사	2021.03.03.~현재	당사 비상무이사	-
	남경우	사내이사	2023.01.25.~현재	사내이사	-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서동수	사외이사	2023.05.18.~현재	사외이사	-
	남기복	감사	2023.05.18.~현재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4	2	5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및등록신청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제41류)	2015.05.02. 출원 2016.02.22. 등록	출원 제41-2015-0020737 등록 제41-0349387-0000	김진아	2026.02.22.

※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현재 (주)파블로아트컴퍼니 법인이 전용사용권을 획득하고 있기에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22년 11월 21일 (주)파블로아트컴퍼니에서 (주)아이스크림아트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사업 현황

1.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5. 07. 20.(경남거제 르호봇센터점)

리브로아르츠(LIBROARTS)] 영업표지로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점포는 당사 김승아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 가맹본부를 운영하던 때로서 상기 가맹사업 시작 점포는 당사 김승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가맹본부를 운영 중일 때 개점된 최초의 가맹점입니다.

2. [리브로아르츠(LIBROARTS)]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리브로아르츠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김진아	2015.02.01. ~2018.11.04.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 130-6(노은동)
리브로아르츠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김진아	2018.11.05 ~2021.02.17.	대전 유성구 지족북로 33, 108동 1104호(지족동, 노은꿈에그린1단지)
(주)파블로 아트컴퍼니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김승아	2021.02.18. ~2021.08.2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15층1513호 (역삼동, 성지하이츠II)
(주)파블로 아트컴퍼니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김승아	2021.08.25. ~2022.11.2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5, 5층(대치동)
(주)아이스크림 아트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김승아	2022.11.21. ~2023.01.0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5, 5층(대치동)
(주)아이스크림 아트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박기석	2023.01.09. ~2023.08.1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5, 5층(대치동)
(주)아이스크림 아트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이석호	2023.08.16. ~2024.01.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5, 5층(대치동)
(주)아이스크림 아트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이석호	2024.01.04.~현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8층(대치동, 신안빌딩)

3. [리브로아르츠(LIBROARTS)] 업종

영업표지	업종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교육	영유아미술교육, 하브루타 교육컨텐츠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9	49	0	50	50	0	42	42	0
서울	4	4		5	5		4	4	
부산	1	1		1	1		1	1	
대구	4	4		2	2		1	1	
인천	0	0		1	1		1	1	
광주	5	5		4	4		4	4	
대전	4	4		5	5		5	5	
울산	0	0		0	0		0	0	
세종	2	2		2	2		2	2	
경기	15	15		15	15		11	11	
강원	1	1		1	1		1	1	
충북	0	0		1	1		1	1	
충남	3	3		3	3		3	3	
전북	1	1		1	1		1	1	
전남	1	1		0	0		0	0	
경북	2	2		1	1		0	0	
경남	6	6		6	6		5	5	
제주	0	0		2	2		2	2	

※ 일본 1개점 포함 (2023년 말 기준 : 43개점)

5. 바로 전 3년간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55	4		10		49
2022	49	4		3		50
2023	50	1		9		42

6. [리브로아르츠(LIBROARTS)]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리브로아르츠(LIBROARTS)]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가맹센터들에게 매출 사항에 관한 보고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할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리브로아르츠(LIBROARTS)] 브랜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말 기준)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총일수)
2023년	40	1,813

※ 일시적인 영업중단 가맹점 2곳은 상기한 영업기간 산정(산정가맹점수 40곳)에서 제외하였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첨과 같이 가맹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리브로아르츠]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3.01.~12.	176,841	176,841		
광고						
판촉						

※ 당사에서 [리브로아르츠] 관련하여 사용한 광고비 및 판촉비는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기 어려워 손익계산서상의 광고선전비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바랍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삼성역 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588-9999 1599-99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은행 지점 방문 수납의 경우

- 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 ②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단, 기존에 국민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③ 당사가 제공한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에 제출하고 예치계좌로 해당 금액을 예치합니다.
- ④ '가맹금 예치증서'를 수령합니다.

(2) 인터넷 뱅킹 이용의 경우

- 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 ②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합니다. 단, 기존에 국민은행 계좌 및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③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banking.kbstar.com)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개인인터넷뱅킹' 로그인을 합니다.
- ④ 로그인 후, '금융서비스>가맹금 예치제' 메뉴에 들어가서 화면 중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 영역의 '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⑤ 좌측 메뉴 중 '가맹금 예치제>가맹점사업자 서비스가입(가맹본부추가)'를 클릭합니다.
- ⑥ 서비스가입 이용약관에 '예, 동의합니다'를 모두 체크하고 하단의 '동의함'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⑦ 서비스가입 등록 화면이 나오면 두 번째 가맹본부 정보에서 '가맹본부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창이 뜨면 가맹본부 상호의 빈 칸에 '[아이스크림아트]'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결과에 '[아이스크림아트]'가 나오면 우측의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⑧ 같은 창 하단의 본인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⑨ 서비스가입 완료 후, 좌측 메뉴의 '가맹금 예치제>가맹점사업자 등록정보'를 클릭합니다.
- ⑩ 해당 화면에 나오는 '입금대상 계좌'를 잘 메모하여, 해당 계좌로 가맹 본부에서 알려드린 금액을 이체하면 됩니다. 이체는 타행에서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 ⑪ 가맹금 예치 내역은 좌측 메뉴의 '가맹금 예치제>가맹점사업자 등록정보'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오픈 필수물품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인테리어 비용	협력 업체 또는 직접 시공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최초 가맹금>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가맹금 반환여부	지급기한	반환불가 사유	비고
가맹비 및 교육비 (오픈필수물 품비 포함)	홈스쿨	금 사백사십만원 ₩4,400,000	일할로 계산하여 소멸	계약체결 즉시	오픈 이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교습소	금 팔백팔십만원 ₩8,800,000				
	학원	금 일천이백팔십만원 ₩12,800,000				

(2)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0			
계약이행보증금	0	계약 체결 즉시	당사로부터 구입한 물품 대금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상액 등 기타 당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 및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원, 부가세 포함)	
예치가맹금	홈스쿨	금 사백사십만원 ₩4,400,000
	교습소	금 팔백팔십만원 ₩8,800,000
	학원	금 일천이백팔십만원 ₩12,80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 기한	비고(기준평수)
총계		2,200~30,800				
		홈스쿨	교습소 (90㎡미만)	학원 (90㎡이상)		
오픈필수물품	당사	최초 가맹금에 포함			계약 체결 후 당사와 개별 협의 기한까지	하브루타 프로그램, 무료 체험 수업용 교재, 현판, X-배너, 전단 4천부, 3단 리플렛 100부, 명함, 원장용 앞치마, 교사네임택 등
		면적 3.3㎡당 금액				
		최초 가맹금에 포함				
인테리어	협력업체 (미지정) 또는 자율선택	2,200	24,000	30,800	협력업체와 정한 기한	도배 및 조명 교체, 사인물 외 그래픽, 시트, 시안 등
		면적 3.3㎡당 금액				90㎡ 이하까지 PY당 88만원
		-	880	770		90㎡ 이상부터 PY당 77만원 (132㎡ 기준)

홍보 및 마케 팅 비용	당사	협의금액	계약 체결 후 당사와 개별 협의 기한까지	제외 가능
※ 별도사항 ① 인테리어공사 등에 사용된 비용은 인테리어 협력업체와 귀하가 협의한 날짜에 결제합니다. ② 해당 금액표시와 합계는 가맹점 개설을 위한 해당 내용의 단순 합계금액으로서 표시되었으므로 가맹점의 크기 및 귀하의 선택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귀하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는 귀하에게 디자인시안 및 시방서 제공과 검수 등을 이행하며 그 대가로 감리비를 지급을 요청합니다. ④ 당사의 감리는 필수사항이며, 감리비는 평당 금 일십일만원(W110,000)<VAT포함>입니다. ⑤ 간판 및 외부 익스테리어, 철거, 집기, 설비, 승압, 냉난방, 전면신규공사, TV, 오디오, PC 등은 별도입니다. ⑥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가맹점포 시장성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⑦ 상기 내역 및 금액은 당사의 경영사정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의 추정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당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입지선정의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조언은 할 수 있으나 가맹점 입지 선정의 책임은 모두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학원법령에 의한 설립, 운영자의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자	- 피후견인·한정피후견인이 아닐 것 - 범죄사실이 없을 것 - 만19세 이상일 것 - 기타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 미술관련 전공자, 아동미술관련 자격 소지자(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일 것
강사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자	만 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리브로아르츠(LIBROARTS)]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당사는 가맹금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및 수익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정액	매월 정기일	계약 해지시		CMS 자동이체 원칙
교육훈련비 (보수교육)	가맹본부	실비로 공지	교육 실시 7일 이전	교육 실시 3일 이전 취소시		개원전 교육 제외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류 변경 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사안 발생시 상호 협의	간판 변경 후 7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결정
특별 경영지도비	가맹본부	22만원	경영지도 실시 3일 이전	실시 전	지도 실시 후	요청시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범위에 따라 다름	교체 또는 보수 공사 3일 이전	공사 시작 전	공사 시작 후	필요시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가맹본부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3일 이전	공사 시작 전	공사 시작 후	필요시
자연이자	가맹본부	연15%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귀하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당사에 지급하는 월 로열티 외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점 양지바랍니다.

구분 (기준: 2023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필요할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및 가맹점 운영 상황에 대하여 전화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금165만원(부가세포함)을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할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통해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서면 승인 없이 해당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의 서면 승인 후 **[리브로아르츠(LIBROARTS)]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이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당사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는 양수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가맹계약에서 정하는 가맹점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리브로아르츠(LIBROARTS)]가맹점으로서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계약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간판 이미지, 디자인, 현판 등 모든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귀하는 온라인상에서 당사로부터 부여 받은 모든 저작권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에 대한 채무관계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귀하는 가맹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후 1개월 이내에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물품 및 콘텐츠와 간판 이미지, 디자인, 현판 등 모든 영업표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리브로아르츠(LIBROARTS)]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당사의 상표.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형사상『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 당사가 제공하였던 콘텐츠를 유사 콘텐츠로 변형 사용할 경우에는 귀하는 이에 대한 관련법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후 1년 동안 당사의 가맹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방식, 영업형태, 영업내용, 콘텐츠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와 당사는 가맹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협의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세부사항

귀하가 [리브로아르츠(LIBROARTS)]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하브루타 프로그램, 수업용 교재는 월 로열티 외에 당사가 자체 개발하여 공급하는 관계로 차액가맹점 산정이 곤란하여 자체로 표기하였사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상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리브로아르츠(LIBROARTS)]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2) 당사는 [리브로아르츠(LIBROARTS)]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리브로아르츠(LIBROARTS)] 하브 루타 학습 커리큘럼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용역을 제공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 2회의 시정 요구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후에 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판매 제한 품목	위반시 책임
당사와 경쟁 업체, 타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에 등록된 원생 외의 인원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하브루타 프로그램, 교재, 교구, 수업 장비, 교재 및 학습, 관리 시스템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 2회의 시정 요구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후에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교습에 대한 수강료의 경우는 당사가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며, 관할 교육청의 수강료 책정기준을 준수하여 책정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유아, 초등 및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강사를 고용하여 미술 과목의 강의 및 수업을 하는 형태의 업종]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홈스쿨	1000세대	영업지역 표시
교습소	2000~3000세대	
학원	3000~5000세대	

(3) 가맹계약 갱신(재계약)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합의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학원 및 교습소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내에서 통상적인 학원생 모집활동이나 영업활동 등을 하지 않아 갱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사한 규모의 다른 영업지역에 비해 가맹본부와의 거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협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합의함, 합의를 거친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 * 상기한 재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 분할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변경행위에 해당되어(가맹사업법 제12조 ① 제3호 및 시행령 별표 3. 다목.)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리브로아르츠(LIBROARTS)]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 가맹사업외 기타 오프라인 매출이나, 온라인 매출이 없습니다.

※ 가맹점의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은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 당사는 가맹사업 오프라인 판매외,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전용상품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명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연장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7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및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4조 지식재산권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4조 3항의 가맹사업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5조의 사업구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11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12조의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13조의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19조의 교육·훈련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22조의 사업의 표준화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대로 영업한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23조의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휴업한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24조의 영업의 중단 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26조의 보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27조의 광고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또는 화의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경우 1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18조 인·허가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17.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 지식재산권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28조

1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비, 로열티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점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28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계

약 내용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영업표지 등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조
○ 영업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5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협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다만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조정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협의로 가능함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사에서 양도를 승인할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당사에서 시행하는 **[리브로아르츠 (LIBROARTS)]** 학원 운영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당사의 양도 승인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 준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양수인 교육 이수 → 영업 개시	문의: 당사

가맹유형	지역거점구역(세대기준)	양수 교육비(VAT포함)
홈스쿨	1000세대	금 사백사십만원 ₩4,400,000
교습소	2000세대	금 팔백팔십만원 ₩8,800,000
학원	3000세대	금 일천이백팔십만원 ₩12,800,000

귀하는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리브로아르츠(LIBROARTS)]** 학원운영권 및 가맹계약상의 제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질권 설정 등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기간 중 당사로부터 아래의 사항을 승인 받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상의 귀하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법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직계 존·비속에게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3. 동업자간의 대표자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단 최초가맹계약서에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명기한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5.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6. 점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귀하가 양도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2월전에 당사에 사전 서면으로 그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승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서면으로 그 승인 또는 거절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사가 위 승인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득한 양수인이나 임차인 등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로서 위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나 임차인이 양도인인 귀하의 잔여 계약기간이 아닌 완전한 신규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당사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사후 3개월 이내 통지, 당사의 승인	모든 권리, 의무	상속자의 통지 → 당사의 승인 → 교육수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납입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계약자의 사전 통지 → 당사의 승인 → 업무진행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후견인, 한정피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에 약정한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리브로아르츠(LIBROARTS)]** 학원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유아, 초등 및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강사를 고용하여 미술 강의 및 수업을 하는 형태의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가맹점사업자는 관할 교육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0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종업원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리브로아르츠(LIBROARTS)]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의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규모 및 매체를 정합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당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광고 +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판촉 계획 공고 → 각 가맹점별 부담액 제시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 당사에 지급 → 가맹점사업자에게 내역서 교부	문의: 당사
	가맹점모집 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 가맹점사업자 50% 이상(광고)/ 70% 이상(판촉)이 시행 여부 및 주요 내용에 찬성하는 광고 및 판촉의 경우에는, 귀하는 반드시 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와 당사가 광고 및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① 귀하는 [리브로아르츠(LIBROARTS)] 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활동의 범위가 자기의 영업지역 내의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비용으로 단독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활동의 범위가 자기의 영업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은 후 관할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하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일부의 광고 및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집행내역 통보 내용

- ① 당사는 사업연도 중 귀하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귀하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통보 내용
1.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해당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사업연도에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3.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로 집행한 비용 및 귀하가 부담한 총액

- ② 귀하가 세부 산출근거가 포함된 광고매체별 광고 횟수·단가 또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교육방법, 원생관리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상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사업 시작 이전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사업 시작 이후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가맹계약서 제8조 상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 제4조(지식재산권),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2조(경업금지의무), 제22조(사업의 표준화) 또는 제29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 금오백만원(₩5,000,000)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도 계산하되 그 비율은 20%로 합니다.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으로 인하여 거래상 대금, 손해배상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 있는 경우 그 금전에 대한 지연이자 연15%로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기간	비용
합계		47일 내외	[10p~12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 분석, 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 ~ 31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부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D-30	-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
인테리어 업체 선정	- 공사범위 설정, 실측, 도면, 견적 수령	D-27 ~ 25(3일)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이수	- 전 직원 가맹점 운영교육 이수	D-7 ~ 4(3일)	
인가	- 소방, 교육청 인가	D-day	
학부모 설명회 준비	- 장소섭외, 홍보, 자료, 제작물, 인원 등	D-40~15(25일)	
학부모 설명회	- 교수프로그램 및 운영 특징점 설명	D-15	
입학고사 실시	- 초/중 분리 실시, 사전 예약제	D-14~5(10일)	
개원	- 가맹점 오픈 및 수업 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

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일 이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 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걸 쳐가맹본부 부담 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 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학원 오픈시 제공되는 오픈지원인력, 홍보물, 판촉물 등은 모두 유상으로 특별히 무상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동판촉 및 개별판촉의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판촉 행사시 귀하와 개별 협의하여 지원 여부 및 품목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 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지도 내용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전에 제시 →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활동 →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 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경영지도 내용 등을 가맹 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제시 →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활동 →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이를 설명.	통상적인 가맹점 경영지도 외 가맹점사업자가 특별 경영지도 요청시 경영지도담당자 (1일 1인 기준 일금이십이만원 (₩220,000) <VAT포함>)	문의: 가맹본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리브로아르츠(LIBROARTS)]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원)	비고
최초 교육	5일	최초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교육시행시 별도 공고	시행시 필수 이수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 운영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 교육의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교육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 및 교사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최초 교육 미이수시에는 개원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당사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계약 해지 또는 계약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과(044-200-4239~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olympiad.ac)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 없음

별첨2.

가맹지사 현황

[2023년 12월말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3.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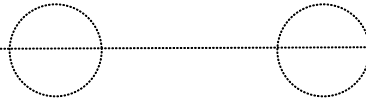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3.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www.libroarts.co.kr

절 취 선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가맹본부 보관용)

가맹사업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문)

본인은 리브로아르츠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포함)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년 월 일 시
2.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장소 :
3.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람 :
4. 가맹희망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기맹본부 : 리브로아르츠 가맹본부 (주)아이스크림아트 대표 이 석 호 (인)	수 령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